

수원지방법원 2023. 5. 25 선고 2021가단545903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부영

피고1. 주식회사 B

2.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호선

변론 종결2023. 4. 13.

판결 선고2023. 5. 25.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7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B이,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간에 체결된 2018. 12.

11.자 투자대리점계약체결에 따라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C에게 지급해주도록 약정되어 있는 투자수익금 중 3차년도 투자수익금 75,000,000원의 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 지위

- 1) 원고는 기계제작 및 부품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3. 10. 21.부터 D이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다가 2020. 1. 13.부터 현재의 대표이사로 변경되었다.
-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공조기기, 도소매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E는 피고 B의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 3)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건축자재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F은 피고 C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나. 투자대리점계약의 체결 등

- 1) 피고 B은 피고 C에 'G 공용배기 시스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계획서 중에 'G 투자대리점 운영안'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갑 제7호증).

3. 투자금액 : 5억 원(3년 거치)

b. 투자수익 지급방안

- ① 1차 년도(수익금 1억 원 지급)
- ② 2차 년도(수익금 2억 원 지급)
- ③ 3차 년도(수익금 2억 원 지급)

c. 투자금액 보증방안

- 피고 B은 투자대리점과 계약 및 투자금 입금 후 공증을 받아 투자자의 원금을 보장토록 한다.
- 2) 피고 B의 대표자인 E는 2018. 11. 29. H에게 'C계약서 최종안'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는데, 위 이메일에 첨부된 투자대리점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투자대리점 계약서

피고 B(이하 '갑'이라 한다)과 피고 C(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한다.

제3조(권리와 의무사항)

- ② 갑은 대리점으로 건식 AD업체는 주식회사 I 과 피고 C 이외 추가적인 계약은 하지 않는다.
- ③ 갑 수주한 현장의 건식 AD 공사는 75% 이상을 을이 자재공급 및 시공을 하도록 한다.
- ④ 갑이 영업 중 수집한 건식 AD 관련 정보는 을에게 제공하여 수주에 적극 지원한다.

제4조(투자수익 지급)

갑은 을에게 투자금에 대한 수익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차 년도 일억 원(100,000,000원)

2차 년도 이억 원(200,000,000원)

3차 년도 이억 원(200,000,000원)

제4조(보증금 및 담보제공)

을은 갑이 정하는 계약보증금으로 5억 원을 예치한다. 갑은 을이 예치한 계약보증금에 대해서 지급보증서(보증금반환이행증권)를 발행하고, 계약 종료시는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한다.

3) 원고는 2018. 12. 11. 피고 C와 이 사건 계약서 중 제4조(투자수익지급) 부분을 '1차 년도 50,000,000원, 2차 년도 75,000,000원, 3차 년도 75,000,000원'으로, 제5조(보증금 및 담보제공)에서 계약보증금을 200,000,000원으로 각각 변경하고 나머지 내용은 위 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의 투자대리점계약(이하 '원고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과 보험가입금액을 200,000,000원으로 하는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4) 피고 B은 2018. 12. 11. 피고 C와 이 사건 계약서 중 제4조(투자수익지급) 부분을 '1차 년도 60,000,000원, 2차 년도 120,000,000원, 3차 년도 120,000,000원'으로, 제5조(보증금 및 담보제공)에서 계약보증금을 300,000,000원으로 각각 변경하고 나머지 내용은 위 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의 투자대리점계약(이하 '피고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J과 보험가입금액을 300,000,000원으로 하는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5) 피고 C는 2018. 12. 11. 위 두 개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교부받은 후 원고에게 200,000,000원, 피고 B에 300,000,000원을 각각 지급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 B에 2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투자수익금의 지급 등

1) 피고 B은 2019. 12. 20. 피고 C에 110,000,000원을 지급한 다음, 피고 C로부터 합계 110,000,000원(품목 수수료, 공급가액 100,000,000원, 세액 10,0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2) 원고는 피고 C에게 2021. 2. 3. 22,000,000원, 2021. 3. 3. 22,000,000원, 2021. 4. 5. 22,000,000원, 2021. 5. 3. 11,000,000원을 합한 77,000,000원을 지급하였다(갑 제6호증).

3) 원고는 피고 B을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바(수원지방법원 2020가합13437호), 해당 소송에서 피고 B은 원고가 2018. 12. 11. 피고 C와 사이에 투자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2019. 12. 11. 투자수익금 50,000,000원을 C에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 B이 원고를 대신하여 위 수익금 상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구상금 채권으로 대여금 채권을 상계한다는 항변을 하였다. 그런데 법원은 피고 B이 피고 C에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바로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 B의 상계항변을 배척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 요지

1) 원고 피고 B이 피고 C로부터 합계 5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고 그에 상응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기로 하였으나, 피고 B 측의 사정으로 그 이행보증보험증권의 발급이 거절되었다. 원고는 피고 B 측의 요청으로 이 사건 투자계약 중 2억 원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투자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의 보증을 위하여 J으로부터 2억 원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피고 C에 교부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의 발급을 위하여 피고 B 및 피고 C의 요청으로 형식상 원고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은 것일 뿐이어서, 원고와 피고 B, 피고 C는 '원고 투자계약 중 투자수익금 지급의무는 피고 B만이 부담하고 피고 C는 투자수익금을 원고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이하 편의상 '이 사건 합의'라 한다).

그런데 피고 C가 이 사건 합의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투자수익금의 지급을 요구하였는바, 원고는 피고 B를 대신하여 77,000,000원(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을 피고 C에 지급하였다.

원고가 이와 같이 지급의무 없는 피고 B의 투자수익금 지급의무를 대신하여 이행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라 구상금으로 77,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가 이 사건 합의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원고에게 3차 투자수익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피고 C를 상대로 3차 투자수익금 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2) 피고 B 피고 B은 자금 사정상 5억 원 중 3억 원을 초과하여 이행보증보험을 발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고 C로부터 3억 원만을 투자받을 계획이었으나, 원고 측 전 대표이사인 D과 현 대표이사인 H이 '피고 C로부터 2억 원을 투자받아 피고 B에 대여하여 주겠다'고 하여 피고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았을 뿐 원고 주장과 같은 이 사건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또한 원고 주장과 같은 1억 1,000만 원은 피고 B의 대리점 계약의 1, 2차 투자수익금으로 충당한 것일 뿐 이 사건 대리점계약의 1차 투자수익금에 충당한 것이 아니어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피고 C에 자신의 투자수익금 지급 채무를 인정하며 지급기한 연장을 요청한 사실이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결국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투자수익금의 지급은 원고 자신의 투자수익금 지급 채무를 이행한 것일 뿐 피고 B의 채무를 대신하여 변제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피고 C 원고 주장의 이 사건 합의는 존재하지 않고 피고 C는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내부 약정을 알지 못한다. 피고 C는 원고와 유효하게 원고 투자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원고는 피고 C에 약정한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다.

설령 위 투자수익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389조 제3항 및 동법 제210조에 의하면

대표이사가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가 대표이사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 위와 같은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앞서 살핀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B은 피고 C로부터 투자받을 목적으로 'G 투자대리점 운영안'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피고 C에 제출하였는데, 위 운영안에 따르면 투자금액의 보증 당사자로 피고 B이 기재되어 있었던 점, ② 피고 B의 대표이사인 E가 원고 대표이사에게 보낸 이메일에 첨부된 '투자대리점 계약서'의 내용도 피고 B이 위와 같이 피고 C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위 운영안 내용과 대부분 일치하고, 위 계약서에 투자수익의 지급 주체가 피고 B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 ③ 원고 투자계약의 경우, 위 운영안이나 위 투자대리점 계약서에 등장하지 않던 원고가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고, 투자금액과 투자수익 부분만 분할 조정되었을 뿐, 다른 계약 내용은 위 투자대리점 계약서 내용과 거의 동일한 점, ④ 원고가 피고 C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활용하지 않고 피고 B에 바로 송금한 점, ⑤ 피고 B이 원고와 별도의 협의 없이 피고 C에 원고 부담 부분까지 포함한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고 피고 C로부터 그에 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점, ⑥ 원고 투자계약의 목적은 피고 B의 사업목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던 반면 원고의 사업목적과의 관련성은 찾기 어려워 원고가 그러한 투자계약을 체결할 만한 동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B은 피고 C로부터 500,000,000원을 투자받으면서 그중 200,000,000원에 관하여 원고 명의를 빌려 투자받는 것으로 하되, 원고와 피고 B 내부적으로 투자수익금의 지급은 실제 투자받은 피고 B이 부담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B을 대신하여 원고 투자계약상 투자수익금 77,000,000원을 피고 C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B은 위와 같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피고 B을 대신하여 2차 투자수익금을 지급한 원고에게 구상금 7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원고가 피고 C에 그 책임을 인정하면서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거나 그 지급기일의 유예를 요청한 이상 이 사건 청구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B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어떠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 B의 내부적인 관계에서 피고 B이 피고 C에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C는 피고 B에 대한 5억 원의 투자계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의 발급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행보증보험증권은 보험계약 당사자인 원고의 책임 발생을 전제로 하는 점, ③ 피고 C가 원고의 투자계약에 따른 책임 발생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여 보증책임을 물을 수 없는 보증보증보험증권의 발급을 요청할 만한 다른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④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투자계약상 책임을 피고 B이 전부 부담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을 피고 C가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B에 대한 내부적인 책임관계는 별론으로, 피고 C가 원고에게 원고 투자계약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점까지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합의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원고 투자계약의 체결 및 원고를 보험계약 당사자로 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형식적인 것이어서 피고 C가 원고에 대한 투자수익금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7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1.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현정